

부천시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8. 31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8.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9.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제정이유

- 행정의 고객인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일대 쇄신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 시민의 요구를 수렴·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행정서비스현장의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행정의 고객인 시민의 참여 아래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 별로 행정서비스현장을 제정·공표하고 이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현장 제·개정 7대 원칙준수 :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비용·편의·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의 원칙 및 고객참여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6조)
- 현장의 공표 및 홍보와 현장의 관리 및 게시에 대한 기준과 소관 분야의 현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제9조 및 제10조)
-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 및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표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현장에 반영함(안 제11조)
- 고객불만족접수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현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보상 금품을 지급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현장 제·개정 내용,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조사결과 분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6~9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함(안 제14조)
-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함(안 제1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어떻게 제정하게 되었나?	○ 대통령훈령에 따른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음
○ 조례 준칙이 타 시·군과 차이가 있는지?	○ 경기도 10개 시·군이 시행 중이나 대동소 이함
○ 조례가 전시적이거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 이 아닌지?	○ 공무원들의 대시민봉사에 대한 자세와 각 오를 명문화한 사항으로 각종 교육을 통하여 현장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매년 잘 못된 사항에 대한 반성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형식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공무원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변화의 의지가 엿보이는 조례인 만큼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며 추진 검토

나. 반대토론

- 조례가 기존에 시행해왔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 준칙과 형식에 얹매이는 것 같음,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돼야 함
- 사전에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하고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과 단순히 현장을 명문화한다면 큰 의미가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별첨

7. 소수의견요지

- 현장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의지의 표명임,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변화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514호
의결년월일	제90회 (2001. 9. 8)

제출년월일 : 2001. 9. 7
제출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시민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분야의 지역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증원하고
- 위촉직 위원의 구성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조항을 삭제 토록 수정함

2.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조정(안 제14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조정(안 제14조제5항)

부천시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3항 "5인 이상 9인"을 "15인 이상 20인"로 하고, "과반수"를 "3분의 2"로 한다.

안 제14조제5항 "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를 ",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4조(위원회) ①~②(생략)</p> <p>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인 이상 9인</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u>과반수</u>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④(생략)</p> <p>⑤위원은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u>학식</u>과 <u>덕망이 높은</u> 자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실·국·소·과장 중에서 임명한다.</p> <p>⑥~⑧(생략)</p>	<p>제14조(위원회) ①~②(제정안과 같음)</p> <p>③.....<u>15인 이상 20인</u></p> <p><u>3분의 2</u>.....</p> <p>④(제정안과 같음)</p> <p>⑤....., <u>관련분야의</u> 전문가 등으로.....</p> <p>.....</p> <p>.....</p> <p>⑥~⑧(제정안과 같음)</p>

[수정안 포함]

부천시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관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현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조례는 부천시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제정 및 개정) ①행정기관의 각 부서장(이하 “현장 제정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현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현장은 기관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

③현장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④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현장은 매년 1회 재정 또는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제5조(현장의 제정절차) ①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현장 초안을 작성하여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현장 초안 작성 단계에서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현장 제정안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를 거친 후 현장을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현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원 것
2.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것을 제시할 것
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비용·편의·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의를 비교·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
7. 고객참여의 원칙 : 현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현장에 반영할 것

제7조(현장의 내용구성) ①현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 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
 - 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 할 수 있는 내용 등
2. 서비스제공 관련 정보
 - 가. 관련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
 - 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 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
 - 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 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
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가. 서비스 현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 방법
 - 나.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

②현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당해 연도의 주요 사업계획은 현장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현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 및 홍보하여야 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고객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의 관리 및 개시) ①현장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현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현장의 이행) ①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현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서비스 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 대상자는 현장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 지역별·업종별·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조사내용은 현장의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 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조사방법은 설문 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 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연도 현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 조치) ①현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현장제정 부서별로 비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3. 불만내용
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제13조(보상조치) ①현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행정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차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 확인
2. 고객, 현장 제정부서의 장, 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여 현장 총괄부서로 송부
3. 총괄부서에서 고객불편사항 조사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불편사항 조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관련고객과 현장 제정부서의 장에게 통보
4. 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과정에서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의하여 공표된 대로 보상

③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①현장의 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 내용의 심사
2.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현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현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의 선정
6. 기타 현장과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실·국·소·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현장업무 총괄부서의 장 또는 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 제11조의 평가결과 현장관련 업무에 협력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우대할 수 있다.

1. 우수부서에는 포상금 지급

2.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개인목표관리 평가시 의무 가점제를 실시 승진 및 성과금에 반영

제16조(백서의 발간) ① 현장 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되, 시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의 개선내용

2. 현장의 제정·개선 현황

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

4. 서비스 결과의 확인·점검 및 그 평가 결과

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③ 현장 제정부서의 장은 현장백서 발간자료를 작성하여 시정백서자료 관련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협조요청)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부서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현장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표된 현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